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지역을 집회 및 시위 금지 통고
대상 지역으로 추가〉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24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수영의원 등 18인
2. 제안연월일 : 2024. 6. 27.
3. 회부연월일 : 2024. 6.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유치원의 경우 2004년 「유아교육법」의 제정 전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어 있었고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학습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 외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 또는 휴식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의 학습권과 안심보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2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주변 지역에서도 학습권 또는 휴식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 ④ (생략)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u>학교</u> 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u>학습권</u> 을 뚜렷이 침	2. ----- ----- <u>학교</u> , 「 <u>유아교육법</u> 」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 <u>영유아보육법</u> 」 제10조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따른 어린이집의----- 학습권 또는 휴식권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과 동법 시행령은 주거지역, 학교 주변지역이나 군사시설 주변지역이 집회·시위 장소로 신고된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는 이유 등을 명확히 밝혀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집회·시위 장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시설보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¹⁾²⁾,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에 대해서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 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금지 요청)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 관할 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는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 유아³⁾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영유아⁴⁾의 교육권, 건강권, 발달권 등은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개정안과 같이 유아의 학습권과 영유아의 휴식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은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특히 2004년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을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통고의 대상이 되도록 정할 당시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⁵⁾⁶⁾,

3)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 6. (생략)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5) 「초·중등교육법」

[시행 2005. 1. 30.]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 1. 29.>

1. 삭제 <2004. 1. 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6) 「유아교육법」

[시행 2005. 1. 30.] [법률 제7120호, 2004. 1. 29., 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반일제”라 함은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시간연장제”라 함은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후 「유아교육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유치원이 학교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유치원을 이 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중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주변을 집회 및 시위의 금지·제한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의 수가 약 2만 9,000여개소에 달하여 어린이집 주변 지역이 집회 및 시위의 제한 지역이 될 경우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봄⁷⁾.

<2023년 기준 어린이집 현황>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합계
6,187	1,206	551	8,886	10,692	124	1,308	28,954

※ 자료: '23. 국가통계포털

<2023년 기준 학교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6,175	3,265	2,379	11,819

※ 자료: '23. 국가통계포털

7) 참고로, 제8조제5항의 사유로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하기 위해서는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법원은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에 대하여, ①집회 장소의 학교로부터의 거리, ②집회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의 정도, ③ 집회 당일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습의 내용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학습권 향유 주체의 수 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경찰청은 기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보호 대상이었으나 「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학교에서 제외됨에 따라 유치원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다시 포함시킨 개정안에 찬성하고,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어린이집 수가 초·중·고교를 합한 수의 약 2.5배 정도라는 점에서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5